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52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3년 2월 6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2월 9일

###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이 위협당하고 지속적인 양극화·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약자의 계층이동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약자와의 동행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약자동행 지수 개발 등으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약자에 공정한 기회제공 및 적극적 배려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약자”와 “약자동행”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약자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약자동행 수행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약자동행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5조)
- 마.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다양한 약자 발굴과 대상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사. 약자동행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아. 약자동행 관련 사업 성과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 자.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차.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카.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타. 약자동행 정책 추진함에 있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 다. 기타
  - (1) 입법예고 (’22.11.10. ~ 11.30.) 결과 요약서 : 별첨
  - (2) 비용추계서 :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며 약자와의 동행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안 제3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4조~안 제13조)은 비용지원, 사무위탁,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원회구성, 약자동행지수, 교육, 홍보,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소득계층 이동가능성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
제2조(정의)	"약자", "약자동행" 등 용어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목적(제1조) 실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제4조(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제6조(기본계획 등)	약자동행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제7조(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약자동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조번호/조제목	주요 내용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약자동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제11조(전담기관 지정)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전담기관의 요건
제12조(교육 및 홍보)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제13조(포상)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
제14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나. 입법 배경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서울을 ‘약자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22.7.1.)한 이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22.7.12.)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직을 신설(’22.8.19.)하여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선정, ‘약자와의 동행지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서울시 전체 4,206개 세부사업 중 642개 사업(전체의 15.3%)이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약자동행 사업을 위해 2023년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므로 약자동행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약자의 개념 정립,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약자동행 대상 사업〉

- 市 전체 4,206개 세부사업 중 642개를 약자동행 사업으로 선정
- 생애주기, 사업분야, 지원대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5대분야\* 선별
  - ※ 5대분야 : 생계(일자리 포함),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사회안전망 구축, 이동권 강화, 노동권 보호)

## 다. 검토 내용

###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자동행 사업의 목적은 비단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 추구하고 사회통합 외에도 사회적 욕구 충족, 약자 개인의 자립과 성장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으로 한정하는 것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을 명시하고 계층 간 이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약자동행의 본래 가치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 안 제2조는 약자와 약자동행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의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바,<sup>1)</sup> 이번 제정조례안은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가치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으로 약자를 정의한 것으로 보여짐

- 국가인권위원회(2003)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신체 또는 인지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인구적 특성 외에 기타 차별 등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반면,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한정함
- 서울시민이 참여한 약자의 정의<sup>2)</sup>에 복지사각지대에서부터 산업전환약자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 스스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약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처럼 협소한 범위의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제정되는 것이 아닌 바, 포괄적으로 약자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혜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과제, 이영아, 국토연구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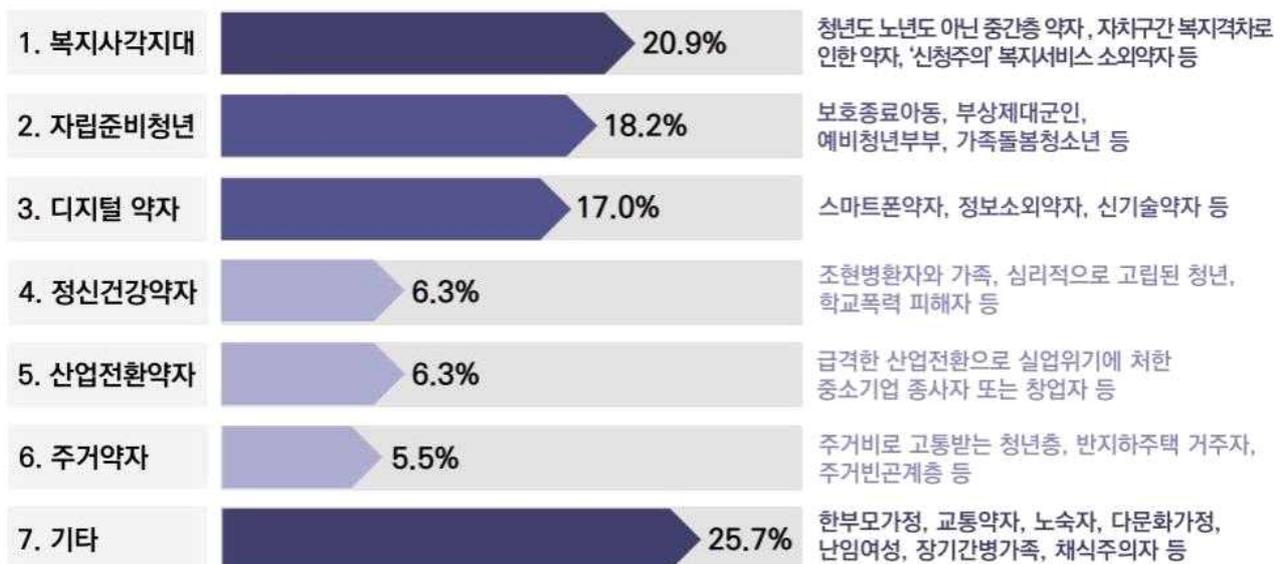
2) 서울시는 '20.7월~10월 동안 300여 명의 시민들과 약 3개월 동안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6개 분야 51개를 도출하였고, '약자 보호 정책'으로는 26건을 발굴하여 서울시에 정책 제안하는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약자에 대한 정의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약자의 정의를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 사회적 약자를 정의한 관련 조례 >

관련 조례	주요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sup>3)</sup>	제2조(정의) 2.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 서울시민이 참여한 약자의 정의 >



3)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폐지제정)의 제2조3에서도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음

###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3조제1항의 약자동행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한 것은 적절해 보임
- 이번 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아야 하나, 향후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이라는 목적 달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 선언적인 내용으로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4) 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것으로, 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무 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이번 제정조례안과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이고 약자동행과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 자치사무(고유사무)에 해당하는 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제정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마땅해 보임

(6) 기본계획 등(안 제6조)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약자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기 실행계획 수립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약자동행 정책 수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안 제6조제2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7) 실태조사(안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약자동행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또는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안 제8조는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정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그러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년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본 위원회만의 특수성 또는 특정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④ ~ ⑧ (생략)

**(9) 약자동행 지수 등(안 제9조)**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기본계획에 따른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 이 아니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또는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자동행 지수는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지수의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와 개발 주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 (10) 정책의 실효성 확보(안 제10조)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시장의 책무)의 규정방식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훈시규정인 점에 비추어, 시장의 책무에 따라 추진되는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 제10조 역시 임의규정(~할 수 있다)을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또는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약자동행은 서울시의 자치사무(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바 약자동행의 관점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약자동행의 관점을 반영한 투자심사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약자동행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0조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7조

### (11) 전담기관 지정(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지수 개발·관리, 조사·연구, 실태조사,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재단법인, 서울시책 전문 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해 보임

제11조(전담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3. 약자동행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
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한 분석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12)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은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이자 사업 예산지원의 근거에 해당되는 바, 관련 교육과 홍보의 대상과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 종합 의견

- 이번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약자동행 관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계획 수립, 조직 신설, 예산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친 바, 약자동행을 서울시 자치사무(고유사무)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고유의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생애 주기 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는 “약자” 정의를 통해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수혜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의의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통해서 “약자”와 “약자동행” 사업의 정의는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자동행”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가치에 해당하므로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추후 시민의 책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약자동행 정책이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바, 안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의 임의규정은 적어도 훈시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